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02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5.

발 의 자 : 김선교 · 김상훈 · 김성원
최수진 · 박덕흠 · 김대식
이양수 · 구자근 · 최보운
김위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농업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적고,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변경되면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변경 등기를 해야 함.

하지만 농업협동조합은 관련법령 등에 따라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 출자금을 포함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, 농업협동조합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경우 출자 1좌의 금액만 등기하는 바, 출자금 관련 등기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변경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하여 매년 발생하는 출자금 변경 등기에 대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(안 제90조제2항 · 제93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출자 1좌의 금액

제93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과 제2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0조(설립등기) ① (생 략)	제90조(설립등기) ① (현행과 같 음)
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	②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 금의 총액</u>	2. <u>출자 1좌의 금액</u>
3. · 4. (생 략)	3. · 4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93조(변경등기) ① (생 략)	제93조(변경등기) ① (현행과 같 음)
② <u>제90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 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 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 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.</u>	<u><삭 제></u>
③ <u>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 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 청인이 된다.</u>	③ <u>제1항</u> ----- ----- ---.
④ · ⑤ (생 략)	④ · ⑤ (현행과 같음)